

# • CONTENTS

- RE100 개요
- **제3자간 전력거래계약**



제3자간 전력거래계약

# RE100 개요



### 1 RE100 개요

#### 01 RE100 개요

- ◆ 2014년 CDP 위원회, Climate Group 주도로 시작된 캠페인으로, 연 100GWh 이상 전력소비 기업을 대상으로 전력 사용량의 100%를 재생에너지로 대체 추진
  - 권고안: 2030 60% → 2040 90% → 2050 100%
- ❖ 현재 애플, 구글, BMW 등 309개 글로벌 기업이 CDP 위원회에 공식 등록하여 캠페인 참여 중
  - 참여기업수: 2017 87 → 2018 155 → 2019 211 → 2020 309
  - 재생에너지 사용량 : 2017 72TWh → 2019 87TWh → 2020 113TWh

#### 02 국내 RE100 이행수단

기업이 RE100 이행수단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구매 또는 사용한 실적은 에너지공단이 확인서 발급을 통해 인정









## 2 국내 RE100 도입 현황

녹색 프리미엄제

#### 상반기 입찰 시행('21.1), 하반기 입찰 준비 중('21.6~7)

- ♦ 한전이 전기요금에 녹색프리미엄을 부과하여 재생에너지를 판매
- ♦ 프리미엄은 재생에너지 발전원가. 현행 전기요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하한가 설정
- ◇ 녹색프리미엄 판매 재원은 에너지공단에 전달하여 재생에너지 재투자에 활용



제3자간 전력거래계약

####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정 중('21.6~7)

- ◆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간 주요 계약 내용 합의 후, 전기판매사업자(한전)와 양 당사자간 각각의 계약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를 사용
- ♦ 발전사업자 ↔ 한전, 한전 ↔ 전기소비자간 각각 계약 체결



인증서 (REC) 구매

#### 시범사업 완료('21.5), 제도 시행 준비 중('21.7)

- ◆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인 REC(신재생 공급인증서)를 직접 구매
- ◆ 에너지공단이 개설하는 REC 거래 플랫폼을 통해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가 자유롭게 거래



지분 투자

#### '21년 하반기 시행 준비 중

◆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하고, 투자한 비중만큼 재생에너지 사용 인정



자가 발전

#### 즉시 활용 가능

◆ 전기소비자가 자기 소유의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, 생산된 전력을 직접 사용



제3자간 전력거래계약

# II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



### 관련 법령

🗋 제31조(전력거래) 제1항

전기 사업법 제31조 제1항

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 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.

전기 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

3자(재생e 발전사-판매사업자-사용자)간 계약에 의한 도매시장 外 전력거래 허용 (시행령 개정 공포 ('21.1.12)

신설

 제19조(전력시장외 전력거래) 제1항 제3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신·재생 에너지발전사업자(자가용전기설비 를 설치한 자는 제외한다)가 1천킬로와트 초과의 발전설비용량(둘 이상의 신-재생 에너지발전사업 자가 공동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발전설비용량은 합산한다)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 업자에게 공급하고. 전기판매사업자가 그 전력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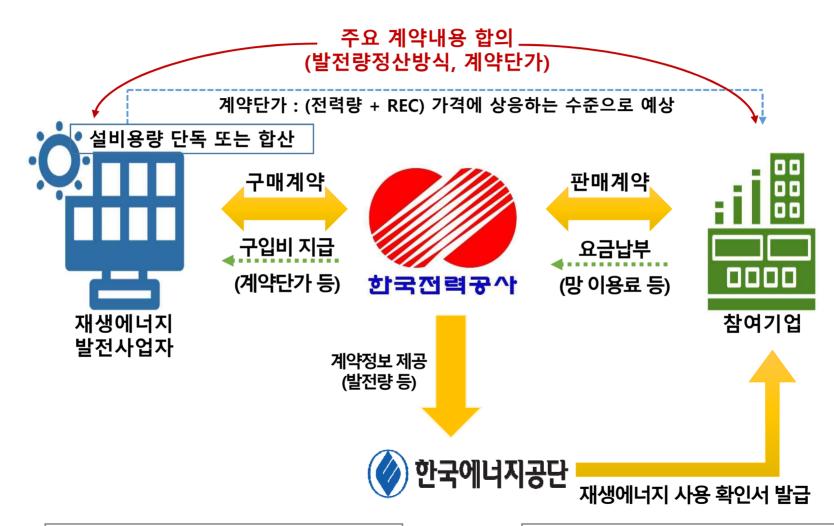
신·재생에너지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(산업부 고시) 제정 중



# 2 개 요 (산업부고시)

개 념	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- 한전, 한전 - 참여기업간 계약
구 분	주 요 내 용
참 여 자	■ (발전사업자) 설비용량 1MW 초과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■ (참여기업) 계약전력 1MW 초과인 고객 [일반용(을), 산업용(을)]
계약가격	■ 발전사업자와 참여기업간에 합의한 가격
계약물량	■ 발전량 전량 구매 (특정 시간대만 구매 및 판매하는 것은 불가)
발 전 원	■ CDP 에서 인정하는 발전원 (태양광, 풍력, 수력, 지열, 바이오, 해양)
계약기간	■ 참여자간 협상 가능하며, 최소 기간은 1년
판 매 사 역 할	<ul> <li>재생에너지사업자와 참여기업 각각과 전력거래계약 체결, 망 서비스 제공 및 그에 따른 요금 부과</li> <li>해당 거래의 보완공급 및 최종공급의무 담당 및 그에 따른 요금 부과</li> </ul>

## 3 거래 절차도



제3자 REC 발급에 관한 규정

: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

요금: 한전으로부터 받는 전기에 대한 요금 +제3자간 계약에 따른 요금

## 4 참여기업(전기사용자) 요금의 산정 (지침 제18조)

구 분	주 요 내 용
계약가격 (제1항)	■ 제6조에 따른 양 당사자간 합의 가격
망 요금 (제2항)	<ul> <li>송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에서 정한 금액</li> <li>적용 단가는 위 규정 별표1에서 확인 가능</li> <li>망 요금은 Peak와 사용량에 따라 산정되므로 각 전기사용자별 금액 상이</li> <li>※ 망 요금 체계 고도화를 위한 정부 R&amp;D 과제 진행 중</li> <li>(과제명: 효율적인 전력설비 투자 유도를 위한 송배전망 이용요금 규제방식 연구, '20.11~'21.10)</li> </ul>
망 손실비용 (제3항)	<ul><li>한국전력통계(국가통계자료)의 손실률을 반영한 금액</li><li>- 각 전기사용자별 접속 선로(송전/배전/송배전)에 따라 금액 상이</li></ul>
부가정산금 (제4항)	<ul> <li>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가 산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한 금액</li> <li>※ 전력거래소는 3자, 기업 PPA 등 장외거래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</li> <li>(과제명: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PPA 구매자의 전력거래기준 및 정산 체계 연구, '21.4~'22.1)</li> </ul>
거래수수료 (제5항)	■ 제3자간 전력거래와 관련한 검침, 요금 청구 등 3자 업무에 소요된 비용 (원/건)
복지특례비용 (제6항)	■ 정책적 배려 계층에 대한 복지 금액 및 특정산업분야 지원금액으로 모든 전기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

## 5 거래 플랫폼 (구축 중)

#### 발전사업자와 참여기업간 원활한 접촉을 위한 거래 플랫폼(7월 중 오픈 예정, https://en-ter.co.kr)

- ✓ 주요 기능 : 발전사업자, 참여기업 기본 정보 등록(위치, 설비용량, 전기사용량 등),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지침 별지1호 서식에 따른 합의서 작성, 계약체결 후 발전량, 요금계산 내역 확인 등
- ✓ '22년 이후에는 발전사업자-한전, 한전-참여기업간 전자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발 예정

#### 에너지마켓 플레이스



제3자간 전력거래계약

# 감사합니다

